학교법인 영남학원

2025학년도 제7차 이사회 회의록

구분	이사	감사
임원정수	7명	2명
재적임원	7명	2명
참석임원	5명	1명

1. 일시: 2026년 2월 4일(수) 14:00~18:22(회의소집통보일: 2026년 1월 26일)

2. 장소: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70 영의관 4층 학교법인 영남학원 이사장실

3. 임원 출결사항

○ 참석임원

이사(5명): 한재숙, 이인호, 김진삼, 최외출, 김홍대

감사(1명): 김영혜

○ 결석임원

이사(2명): 김양수, 최경환

감사(1명): 이성수

○ 배석자

김성철(법인 기획조정실장), 이희용(영남대학교 기획조정처장),
문상혁(영남대학교 인사관리처장 겸 교무처장), 신승훈(영남대학교 대학원장),
김용대(영남대학교의료원장), 이준(부속병원장), 서완석(영남대학교의료원
기획조정처장), 이시형(영남대학교의료원 사무처장), 박삼국(영천병원장),
이재용(영남이공대학교 총장), 이종락(영남이공대학교 기획처장)

4. 안건

<의결사항>

제 1 호의안 학교법인 영남학원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

제 2 호의안 학교법인 영남학원 교원 임용 시행세칙 개정(안) 승인의 건

제 3 호의안 학교법인 영남학원 교직원보수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제 4 호의안 2025학년도 법인 일반업무회계 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승인의 건

제 5 호의안 2026학년도 법인 일반업무회계 자금예산(안) 승인의 건

제 6 호의안 2025학년도 영남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 의료미수금 대손상각(안) 승인의 건

간서명	이사장	한 재 숙	이 사	김 진 삼	이 사	

제 7 호의안 2026학년도 영남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회계 자금예산(안) 승인의 건
제 8 호의안 영남대학교의료원 본관 북편 진료실 외(휴게실, 식당) 증축공사 취소(안) 승인의 건
제 9 호의안 영남대학교의료원 서관 북편 감염성폐기물창고 신설 및 진료 공간 외 확장 증축공사 취소(안) 승인의 건
제10호의안 2025학년도 영남대학교의과대학 부속영천병원 의료미수금 대손상각(안) 승인의 건
제11호의안 2026학년도 영남대학교의과대학 부속영천병원회계 자금예산(안) 승인의 건
제12호의안 영남대학교 교육편제 개편(안) 승인의 건
제13호의안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학과 신설 및 폐지(안) 승인의 건
제14호의안 영남대학교 특수대학원 학과 폐지(안) 승인의 건
제15호의안 영남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제16호의안 영남대학교 교직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제17호의안 2025학년도 영남대학교 교비회계 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승인의 건
제18호의안 2026학년도 영남대학교 교비회계 자금예산(안) 승인의 건
제19호의안 영남대학교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제20호의안 영남대학교 겸임교원 임용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제21호의안 영남대학교 JA교원 인사규정 제정(안) 승인의 건
제22호의안 영남대학교 외국인교원 인사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제23호의안 영남대학교 2026.03.01.자 전임교원 신규임용(안) 승인의 건
제24호의안 2025학년도 영남이공대학교 교비회계 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승인의 건
제25호의안 2026학년도 영남이공대학교 교비회계 자금예산(안) 승인의 건
제26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직원인사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제27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제28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연봉계약제 일반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제29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직제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제30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비정년계열전임교원 계약임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제31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교원인사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제32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JA교원 인사규정 제정(안) 승인의 건
제33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2026.03.01.자 교원 신규임용(안) 승인의 건
제34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2026.03.01.자 교원 승진임용(안) 승인의 건
제35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2026.03.01.자 교원 정년보장임용(안) 승인의 건
<보고사항>
제 1 호 영남대학교 교원 임용 보고의 건

5. 회의내용

의 장: 재적이사 7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하다.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의결사항>

제6호의안 2025학년도 영남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 의료미수금 대손상각(안) 승인의 건

의　　장: **제6호의안 2025학년도 영남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 의료미수금 대손상각(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이준 부속병원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이준 부속병원장: [붙임1] 2025학년도 영남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 의료미수금 대손상각(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　　장: 제6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6호의안 2025학년도 영남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 의료미수금 대손상각(안) 승인의 건**은 김진삼 이사의 동의와 이인호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5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7호의안 2026학년도 영남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회계 자금예산(안) 승인의 건

의　　장: **제7호의안 2026학년도 영남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회계 자금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서완석 의료원 기획조정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서완석 의료원 기획조정처장: 2026학년도 영남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회계 자금예산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다고 하고, 배부자료를 중심으로 항목별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2026학년도 예산(A)	2025학년도 예산(B)	증감(A)-(B)
709,901,921,000원	622,265,308,000원	87,636,613,000원

의　　장: 제7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7호의안 2026학년도 영남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회계 자금예산(안) 승인의 건**은 김홍대 이사의 동의와 김진삼 이사의 재청에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따라 참석이사 5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8호의안 영남대학교의료원 본관 북편 진료실 외(휴게실, 식당) 증축공사 취소(안) 승인의 건

의 장: **제8호의안 영남대학교의료원 본관 북편 진료실 외(휴게실, 식당) 증축공사 취소(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서완석 의료원 기획조정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서완석 의료원 기획조정처장: 2022.08.17. 이사회에서 승인된 영남대학교의료원 본관 북편 진료실 외(휴게실, 식당) 증축공사를 취소하고자 한다고 하며, 배부자료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 장: 제8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8호의안 영남대학교의료원 본관 북편 진료실 외(휴게실, 식당) 증축공사 취소(안) 승인의 건**은 김홍대 이사의 동의와 이인호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5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9호의안 영남대학교의료원 서관 북편 감염성폐기물창고 신설 및 진료 공간 외 확장 증축공사 취소(안) 승인의 건

의 장: **제9호의안 영남대학교의료원 서관 북편 감염성폐기물창고 신설 및 진료 공간 외 확장 증축공사 취소(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서완석 의료원 기획조정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서완석 의료원 기획조정처장: 2022.08.17. 이사회에서 승인된 영남대학교의료원 서관 북편 감염성폐기물창고 신설 및 진료 공간 외 확장 증축공사를 취소하고자 한다고 하며, 배부자료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 장: 제9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9호의안 영남대학교의료원 서관 북편 감염성폐기물창고 신설 및 진료 공간 외 확장 증축공사 취소(안) 승인의 건**은 김홍대 이사의

동의와 이인호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5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10호의안 2025학년도 영남대학교의과대학 부속영천병원 의료미수금 대손상각(안) 승인의 건

의　　장: **제10호의안 2025학년도 영남대학교의과대학 부속영천병원 의료미수금 대손상각(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박삼국 영천병원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박삼국 영천병원장: [붙임2] 2025학년도 영남대학교의과대학 부속영천병원 의료미수금 대손상각(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　　장: 제10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10호의안 2025학년도 영남대학교의과대학 부속영천병원 의료미수금 대손상각(안) 승인의 건**은 이인호 이사의 동의와 김진삼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5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11호의안 2026학년도 영남대학교의과대학 부속영천병원회계 자금예산(안) 승인의 건

의　　장: **제11호의안 2026학년도 영남대학교의과대학 부속영천병원회계 자금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박삼국 영천병원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박삼국 영천병원장: 2026학년도 영남대학교의과대학 부속영천병원회계 자금예산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다고 하고, 배부자료를 중심으로 항목별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2026학년도 예산(A)	2025학년도 예산(B)	증감(A)-(B)
37,400,000,000원	36,250,000,000원	1,150,000,000원

(15:00 최외출 이사 퇴장하다.)

의　　장: 제11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의　　장: **제11호의안 2026학년도 영남대학교의과대학 부속영천병원회계 자금예산(안) 승인의 건**은 김진삼 이사의 동의와 이인호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4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12호의안 영남대학교 교육편제 개편(안) 승인의 건

의　　장: **제12호의안 영남대학교 교육편제 개편(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문상혁 영남대학교 교무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문상혁 영남대학교 교무처장: [붙임3] 영남대학교 교육편제 개편(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　　장: 제12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12호의안 영남대학교 교육편제 개편(안) 승인의 건**은 이인호 이사의 동의와 김홍대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4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13호의안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학과 신설 및 폐지(안) 승인의 건

의　　장: **제13호의안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학과 신설 및 폐지(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신승훈 영남대학교 대학원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신승훈 영남대학교 대학원장: [붙임4]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학과 신설 및 폐지(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　　장: 제13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13호의안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학과 신설 및 폐지(안) 승인의 건**은 김진삼 이사의 동의와 이인호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4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14호의안 영남대학교 특수대학원 학과 폐지(안) 승인의 건

의　　장: **제14호의안 영남대학교 특수대학원 학과 폐지(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신승훈 영남대학교 대학원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신승훈 영남대학교 대학원장: [붙임5] 영남대학교 특수대학원 학과 폐지(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　　장: 제14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14호의안 영남대학교 특수대학원 학과 폐지(안) 승인의 건**은 이인호 이사의 동의와 김진삼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4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15호의안 영남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의　　장: **제15호의안 영남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이희용 영남대학교 기획조정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이희용 영남대학교 기획조정처장: [붙임6] 영남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　　장: 제15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15호의안 영남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은 김진삼 이사의 동의와 이인호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4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16호의안 영남대학교 교직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의　　장: **제16호의안 영남대학교 교직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이희용 영남대학교 기획조정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이희용 영남대학교 기획조정처장: [붙임7] 영남대학교 교직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　　장: 제16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16호의안 영남대학교 교직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은 김진삼 이사의 동의와 김홍대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4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17호의안 2025학년도 영남대학교 교비회계 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승인의 건

의　　장: **제17호의안 2025학년도 영남대학교 교비회계 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이희용 영남대학교 기획조정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이희용 영남대학교 기획조정처장: 2025학년도 영남대학교 교비회계 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다고 하고, 배부자료를 중심으로 항목별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2차 추경예산(A)	1차 추경예산(B)	증감(A)-(B)
377,624,558,000원	376,874,928,000원	749,630,000원

(16:10 최외출 이사 입장하다.)

의　　장: 제17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17호의안 2025학년도 영남대학교 교비회계 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승인의 건**은 김진삼 이사의 동의와 이인호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5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18호의안 2026학년도 영남대학교 교비회계 자금예산(안) 승인의 건

의　　장: **제18호의안 2026학년도 영남대학교 교비회계 자금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이희용 영남대학교 기획조정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이희용 영남대학교 기획조정처장: 2026학년도 영남대학교 교비회계 자금예산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다고 하고, 배부자료를 중심으로 항목별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2026학년도 예산(A)	2025학년도 예산(B)	증감(A)-(B)
387,690,114,000원	376,874,928,000원	10,815,186,000원

의　　장: 제18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18호의안 2026학년도 영남대학교 교비회계 자금예산(안) 승인의 건**은 김진삼 이사의 동의와 이인호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5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19호의안 영남대학교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의　　장: **제19호의안 영남대학교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문상혁 영남대학교 인사관리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문상혁 영남대학교 인사관리처장: [붙임8] 영남대학교 교원인사규정 개정(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　　장: 제19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19호의안 영남대학교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은 이인호 이사의 동의와 김진삼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5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20호의안 영남대학교 겸임교원 임용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의　　장: **제20호의안 영남대학교 겸임교원 임용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문상혁 영남대학교 인사관리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문상혁 영남대학교 인사관리처장: [붙임9] 영남대학교 겸임교원 임용규정 개정(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　　장: 제20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20호의안 영남대학교 겸임교원 임용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은 이인호 이사의 동의와 김진삼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5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21호의안 영남대학교 JA교원 인사규정 제정(안) 승인의 건

의　　장: **제21호의안 영남대학교 JA교원 인사규정 제정(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문상혁 영남대학교 인사관리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문상혁 영남대학교 인사관리처장: [붙임10] 영남대학교 JA교원 인사규정 제정(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　　장: 제21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21호의안 영남대학교 JA교원 인사규정 제정(안) 승인의 건**은 김진삼 이사의 동의와 이인호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5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22호의안 영남대학교 외국인교원 인사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의　　장: **제22호의안 영남대학교 외국인교원 인사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문상혁 영남대학교 인사관리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문상혁 영남대학교 인사관리처장: [붙임11] 영남대학교 외국인교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　　장: 제22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22호의안 영남대학교 외국인교원 인사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은 이인호 이사의 동의와 김진삼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5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23호의안 영남대학교 2026.03.01.자 전임교원 신규임용(안) 승인의 건

의　　장: **제23호의안 영남대학교 2026.03.01.자 전임교원 신규임용(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문상혁 영남대학교 인사관리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문상혁 영남대학교 인사관리처장: [붙임12] 영남대학교 2026.03.01.자 전임교원 신규임용(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　　장: 제23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23호의안 영남대학교 2026.03.01.자 전임교원 신규임용(안) 승인의 건**은 김진삼 이사의 동의와 이인호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5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간서명	이사장	황재수	이 사	김진삼	이 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하여 임용대상자의 생년월일은 비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선언하다.

<보고사항>

제1호 영남대학교 교원 임용 보고의 건

의 장: **보고사항 제1호 영남대학교 교원 임용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다고 하고, 문상혁 영남대학교 인사관리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다.

문상혁 영남대학교 인사관리처장: [붙임13] 영남대학교 교원 임용 보고의 건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보고하다.

의 장: 제1호의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보고사항 제1호 영남대학교 교원 임용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접수한다고 선언하고, 참석이사 5명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하여 임용대상자의 생년월일과 국적은 비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선언하다.

<의결사항>

제24호의안 2025학년도 영남이공대학교 교비회계 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승인의 건

의 장: **제24호의안 2025학년도 영남이공대학교 교비회계 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이종락 영남이공대학교 기획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이종락 영남이공대학교 기획처장: 2025학년도 영남이공대학교 교비회계 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다고 하고, 배부자료를 중심으로 항목별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2차 추경예산(A)	1차 추경예산(B)	증감(A)-(B)
74,199,637,000원	74,883,940,000원	-684,303,000원

의 장: 제24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간서명	이사장	황재숙	이 사	김진생	이 사	

의　　장: **제24호의안 2025학년도 영남이공대학교 교비회계 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승인의 건**은 김진삼 이사의 동의와 이인호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5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25호의안 2026학년도 영남이공대학교 교비회계 자금예산(안) 승인의 건

의　　장: **제25호의안 2026학년도 영남이공대학교 교비회계 자금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이종락 영남이공대학교 기획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이종락 영남이공대학교 기획처장: 2026학년도 영남이공대학교 교비회계 자금예산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다고 하고, 배부자료를 중심으로 항목별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2026학년도 예산(A)	2025학년도 예산(B)	증감(A)-(B)
76,494,874,000원	74,883,940,000원	1,610,934,000원

의　　장: 제25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25호의안 2026학년도 영남이공대학교 교비회계 자금예산(안) 승인의 건**은 이인호 이사의 동의와 김진삼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5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26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직원인사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의　　장: **제26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직원인사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이종락 영남이공대학교 기획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이종락 영남이공대학교 기획처장: [붙임14] 영남이공대학교 직원인사 규정 개정(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　　장: 제26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26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직원인사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은 김진삼 이사의 동의와 이인호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5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제27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의　　장: **제27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이종락 영남이공대학교 기획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이종락 영남이공대학교 기획처장: [붙임15] 영남이공대학교 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　　장: 제27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27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은 김진삼 이사의 동의와 이인호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5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28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연봉계약제 일반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의　　장: **제28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연봉계약제 일반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이종락 영남이공대학교 기획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이종락 영남이공대학교 기획처장: [붙임16] 영남이공대학교 연봉계약제 일반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　　장: 제28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28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연봉계약제 일반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은 김진삼 이사의 동의와 이인호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5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29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직제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의　　장: **제29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직제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이종락 영남이공대학교 기획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이종락 영남이공대학교 기획처장: [붙임17] 영남이공대학교 직제 규정 개정(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간서명	이사장	황재수	이 사	김진삼	이 사	

의　　장: 제29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29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직제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은 김진삼 이사의 동의와 이인호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5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30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비정년계열전임교원 계약임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의　　장: **제30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비정년계열전임교원 계약임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이종락 영남이공대학교 기획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이종락 영남이공대학교 기획처장: [붙임18] 영남이공대학교 비정년계열전임교원 계약임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　　장: 제30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30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비정년계열전임교원 계약임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은 김진삼 이사의 동의와 이인호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5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31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교원인사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의　　장: **제31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교원인사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이종락 영남이공대학교 기획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이종락 영남이공대학교 기획처장: [붙임19] 영남이공대학교 교원인사 규정 개정(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　　장: 제31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31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교원인사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은 김진삼 이사의 동의와 이인호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5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간서명	이사장	장재숙	이 사	김진삼	이 사	이인호

제32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JA교원 인사규정 제정(안) 승인의 건

의　　장: **제32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JA교원 인사규정 제정(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이종락 영남이공대학교 기획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이종락 영남이공대학교 기획처장: [붙임20] 영남이공대학교 JA교원 인사규정 제정(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　　장: 제32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32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JA교원 인사규정 제정(안) 승인의 건**은 김진삼 이사의 동의와 이인호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5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33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2026.03.01.자 교원 신규임용(안) 승인의 건

의　　장: **제33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2026.03.01.자 교원 신규임용(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이종락 영남이공대학교 기획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이종락 영남이공대학교 기획처장: [붙임21] 영남이공대학교 2026.03.01.자 교원 신규임용(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　　장: 제33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33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2026.03.01.자 교원 신규임용(안) 승인의 건**은 김진삼 이사의 동의와 이인호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5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하여 임용대상자의 생년월일은 비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선언하다.

제34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2026.03.01.자 교원 승진임용(안) 승인의 건

의　　장: **제34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2026.03.01.자 교원 승진임용(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이종락 영남이공대학교 기획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이종락 영남이공대학교 기획처장: [붙임22] 영남이공대학교 2026.03.01.자 교원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승진임용(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　　장: 제34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34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2026.03.01.자 교원 승진임용(안) 승인의 건**은 김진삼 이사의 동의와 이인호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5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하여 임용대상자의 생년월일은 비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선언하다.

제35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2026.03.01.자 교원 정년보장임용(안) 승인의 건

의　　장: **제35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2026.03.01.자 교원 정년보장임용(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이종락 영남이공대학교 기획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이종락 영남이공대학교 기획처장: [붙임23] 영남이공대학교 2026.03.01.자 교원 정년보장임용(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　　장: 제35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35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2026.03.01.자 교원 정년보장임용(안) 승인의 건**은 김진삼 이사의 동의와 이인호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5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하여 임용대상자의 생년월일은 비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선언하다.

제1호의안 학교법인 영남학원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

의　　장: **제1호의안 학교법인 영남학원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김성철 법인 기획조정실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김성철 법인 기획조정실장: [붙임24] 학교법인 영남학원 정관 변경(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　　장: 제1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의　　장: **제1호의안 학교법인 영남학원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은 이인호 이사의 동의와 김진삼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5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2호의안 학교법인 영남학원 교원 임용 시행세칙 개정(안) 승인의 건

의　　장: **제2호의안 학교법인 영남학원 교원 임용 시행세칙 개정(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김성철 법인 기획조정실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김성철 법인 기획조정실장: [붙임25] 학교법인 영남학원 교원 임용 시행세칙 개정(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　　장: 제2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2호의안 학교법인 영남학원 교원 임용 시행세칙 개정(안) 승인의 건**은 이인호 이사의 동의와 김홍대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5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3호의안 학교법인 영남학원 교직원보수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의　　장: **제3호의안 학교법인 영남학원 교직원보수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김성철 법인 기획조정실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김성철 법인 기획조정실장: [붙임26] 학교법인 영남학원 교직원보수 규정 개정(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　　장: 제3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3호의안 학교법인 영남학원 교직원보수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은 이인호 이사의 동의와 김홍대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5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4호의안 2025학년도 법인 일반업무회계 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승인의 건

의　　장: **제4호의안 2025학년도 법인 일반업무회계 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김성철 법인 기획조정실장에게 안건을

간서명	이사장	홍재숙	이 사	김진삼	이 사	김홍대

발표하도록 하다.

김성철 법인 기획조정실장: 2025학년도 법인 일반업무회계 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다고 하고, 배부자료를 중심으로 항목별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2차 추경예산(A)	1차 추경예산(B)	증감(A)-(B)
7,973,382,000원	7,665,834,000원	307,548,000원

의 장: 제4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4호의안 2025학년도 법인 일반업무회계 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승인의 건**은 김진삼 이사의 동의와 이인호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5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5호의안 2026학년도 법인 일반업무회계 자금예산(안) 승인의 건

의 장: **제5호의안 2026학년도 법인 일반업무회계 자금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김성철 법인 기획조정실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김성철 법인 기획조정실장: 2026학년도 법인 일반업무회계 자금예산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다고 하고, 배부자료를 중심으로 항목별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2026학년도 예산(A)	2025학년도 예산(B)	증감(A)-(B)
7,551,194,000원	7,973,382,000원	-422,188,000원

의 장: 제5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5호의안 2026학년도 법인 일반업무회계 자금예산(안) 승인의 건**은 김진삼 이사의 동의와 이인호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5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의 장: 회의록 간서명 임원은 참석이사 5명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한재숙 이사장, 김진삼 이사, 김홍대 이사로 선정한다고 하고, 이사회의 폐회를 선언하다.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2026. 02. 04.

학교법인 영남학원 이사장 한 재 숙 한재숙

이 사 이 인 호

이 사 김 진 삼 김진삼

이 사 최 외 출 최외출

이 사 김 흥 대 김흥대

감 사 김 영 혜

간서명	이사장	한재숙	이 사	김진삼	이 사	김흥대

[붙임1] 2025학년도 영남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 의료미수금 대손상각(안)
(제6호의안 관련)

No	구분		건수	금액(원)	대상년도
1	외래원무팀	외래 선처치미수금	14	243,900	2021학년도
2	법무지원팀	입원 송무 미수금	1	2,530,130	2009학년도
계			15	2,774,030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붙임2] 2025학년도 영남대학교의과대학 부속영천병원 의료미수금
대손상각(안)
(제10호의안 관련)

No	구분		건수	금액(원)	대상년도
1	원무팀	외래 미수금	1	26,800	2022학년도
2	원무팀	외래 미수금	3	1,000,900	2013학년도
계			4	1,027,700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붙임3] 영남대학교 교육편제 개편(안)
(제12호의안 관련)

□ 2027학년도 교육편제 개편(안)

1. 예술대학 음악학부

현재			변경(안)		
단과대학명	학부(과)명	정원	단과대학명	학부(과)명	정원
예술대학	음악학부	51	예술대학	음악학부	50
	-국악및작곡전공	14		-국악·작곡·성악전공	20
	-성악전공	7		-관현악및피아노전공	30
	-피아노전공	15			
	-관현악전공	15			

2. 디지털융합대학 컴퓨터학부

현재			변경(안)		
단과대학명	학부(과)명	정원	단과대학명	학부(과)명	정원
디지털융합대학	컴퓨터학부	240	디지털융합대학	컴퓨터학부	260
	-컴퓨터공학전공	100		-컴퓨터공학전공	80
	-정보통신공학전공	80		-정보통신공학전공	60
	-소프트웨어융합전공	60		-소프트웨어보안전공(명칭변경)	60
				-AI융합전공(신설)	60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붙임4]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학과 신설 및 폐지(안)
(제13호의안 관련)

1. 일반대학원 학과 신설 대상 학과

구분		설치 학위과정
일반학과	국제한국어교육학과(2027.3.1. 시행)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응용중국어통번역학과(2027.3.1. 시행)	석사학위과정

2. 일반대학원 학과 폐지 대상 학과

학과간 협동과정 학과	인문콘텐츠문화학과(2026.3.1. 시행)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학과(2027.3.1. 시행)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붙임5] 영남대학교 특수대학원 학과 폐지(안)
(제14호의안 관련)

1. 특수대학원(경영행정대학원) 학과 폐지 대상 학과

일반학과	리더십코칭학과

2. 학과 설치 변경(안) 시행시기

시행적용일	2026년 3월 1일(2026학년도 1학기)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붙임6] 영남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제15호의안 관련)

현 행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5.10.15.	개 정 안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6.00.00.	개정 사유
제5조(부총장) ① 부총장은 교육혁신부총장, 경영전략부총장, 산학연구부총장, 의무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을 둔다.	제5조(부총장) ① 부총장은 교육혁신부총장, 경영전략부총장, 산학연구부총장, **국제교학부총장,** 의무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을 둔다.	국제교학부총장 신설
② **교육혁신부총장, 경영전략부총장, 산학연구부총장, 의무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각각 관장하며 총장을 보좌한다.	② **부총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각각 관장하며 총장을 보좌한다.	조문 간소화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경영전략부총장 : 기획조정처, 총무처, 시설관리처, 뮤지엄아트센터, **정보전산원**, 생활관	2. 경영전략부총장 : 기획조정처, **정보혁신처,** 총무처, 시설관리처, 뮤지엄아트센터, 생활관	정보전산원을 본부 정보혁신처로 개편 및 부속기관 한국어교육원과 외국어교육원과 통합 후 한국어·국제언어교육원으로 변경
3. 산학연구부총장 : 산학연구처, 부설 연구기관, 산학협력단	3. *(현행과 같음)*	
4. 삭제	4. **국제교학부총장 : 국제처, 한국어·국제언어교육원, 국제개발협력원**	
5. 의무부총장 : 의료원	5. *(현행과 같음)*	
6. 대외협력부총장 : **국제처**, 대외협력처, **한국어교육원, 국제개발협력원**	6. **대외협력부총장 : 대외협력처**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교육혁신부총장, 경영전략부총장, 산학연구부총장 및 대외협력부총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무부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④ **부총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무부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조문 간소화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현 행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5.10.15.	개 정 안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6.00.00.	개정 사유
제7조(대학교 본부) ① *(생략)* ①의2 경영전략부총장 산하에 기획조정처, 총무처, 시설관리처를 둔다. ①의3 *(생략)* ①의4 **삭제** ①의5 대외협력부총장 산하에 **국제처,** 대외협력처를 둔다. ①의6~⑤ *(생략)*	제7조(대학교 본부) ① *(현행과 같음)* ①의2 경영전략부총장 산하에 기획조정처, **정보혁신처,** 총무처, 시설관리처를 둔다. ①의3 *(현행과 같음)* **①의4 국제교학부총장 산하에 국제처를 둔다.** ①의5 대외협력부총장 산하에 대외협력처를 둔다. ①의6~⑤ *(현행과 같음)*	정보전산원→정보혁신처 개편사항 반영 국제교학부총장 신설사항 반영
제11조(기획조정처) 기획조정처에 기획조정팀, 예산팀, **전략평가팀,** 자산정책팀을 두고,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 설>**	제11조(기획조정처) **①** 기획조정처에 기획조정팀, 예산팀, 자산정책팀을 두고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처에 IR센터를 두고, 센터에 전략평가팀, 성과분석팀을 두며,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항 분리 및 IR센터 신설사항 반영, 전략평가팀을 IR센터 산하로 이동 및 성과분석팀 신설
<신 설>	**제11조의2(정보혁신처) 정보혁신처에 경영정보팀, 학사정보팀, IT인프라팀, 정보보안팀을 두고,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부속기관 정보전산원 → 본부 정보혁신처로 개편
제14조의2(국제처) ① 국제처에 국제협력팀, **유학생지원팀을 두고,**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② 국제처에 글로벌입학본부를 두	제14조의2(국제처) ① 국제처에 국제협력팀**을 두고,**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② *(현행과 같음)*	유학생지원본부 신설 및 유학생지원팀 분리개편 사항 반영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현 행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5.10.15.	개 정 안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6.00.00.	개정 사유
고, 본부에 유학생입학팀을 두며, 본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③ **유학생지원팀에 부팀장을 둘 수 있으며, 부팀장은 7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③ **삭제**	유학생지원팀 부팀장 내용 삭제
<신 설>	**④ 국제처에 유학생지원본부를 두고, 본부에 유학생학사팀, 유학생취업정착팀을 두고, 본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팀장은 6급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유학생지원본부 신설에 따른 유학생지원팀 분리 개편 사항 반영
제18조(대학원) ① 우리 대학교 대학원에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을 두며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설치하는 대학원은 대학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대학원)① *(현행과 같음)*	
② 일반대학원에 대학원장, 전문대학원에 각각의 대학원장, 특수대학원에 **특수대학원장과** 각각의 대학원장을 둔다.	② 일반대학원에 대학원장, 전문대학원에 각각의 대학원장, 특수대학원에 각각의 대학원장을 둔다.	특수대학원 전체를 통할하는 특수대학원장 폐지
③ 제2항의 각 대학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특수대학원장은 대학원장이 겸임한다.**	③ 제2항의 각 대학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9조(행정 부서) ① 일반대학원에	제19조(행정 부서) ① 일반대학원에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현 행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5.10.15.	개 정 안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6.00.00.	개정 사유
대학원학사팀, 대학원국제팀, 전문대학원에 각각의 행정실, 특수대학원에 **특수대학원 행정실과 교육, 공학, 박정희새마을대학원에 각 행정실을 둔다**. ② 제1항의 일반대학원 각 팀에는 팀장을 두고,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그 외 행정실에는 실장을 두고, 실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③ **특수대학원 행정실**에 부실장을 둘 수 있으며, 부실장은 7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대학원학사팀, 대학원국제팀, 전문대학원에 각각의 행정실, 특수대학원에 **각각의 행정실을 둔다.** ② 제1항의 일반대학원 각 팀에는 팀장을 두고,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그 외 행정실에는 실장을 두고, 실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③ **각 행정실**에 부실장을 둘 수 있으며, 부실장은 7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특수대학원 행정실 각 대학원 행정실로 분리개편 사항 반영 각 행정실에 부실장을 둘 수 있도록 함
제25조(정보전산원) ① 정보전산원에 원장을 둔다. **② 정보전산원에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정보전산원에 스마트정보팀, 정보운영팀, 시스템운영팀, 정보보안팀을 두고,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④ 삭제	**제25조(정보전산원)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현행과 같음)*	부속기관 정보전산원 → 본부 정보혁신처로 개편
제32조의3(**한국어교육원**) ① **한국어교육원**에 원장을 둔다. ② **한국어교육원**에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한국어교육원**에 행정실을 두고, 실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제32조의3(**한국어·국제언어교육원**) ① **한국어·국제언어교육원**에 원장을 둔다. ② **한국어·국제언어교육원**에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한국어·국제언어교육원**에 행정실을 두고, 실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부속기관 한국어교육원 → 외국어교육원과 통합 후 한국어·국제언어교육원으로 변경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현 행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5.10.15.	개 정 안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6.00.00.	개정 사유
④ **한국어교육원** 행정실에 부실장을 둘 수 있으며, 부실장은 7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④ **한국어·국제언어교육원** 행정실에 부실장을 둘 수 있으며, 부실장은 7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제33조(부설 연구기관) ① 우리 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부설 연구기관을 두며, 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3조(부설 연구기관) ① 우리 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부설 연구기관을 두며, 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1.~52. *(생략)*	1.~52. *(현행과 같음)*	
53. 항공발전연구소	**53. 삭제**	미술보존복원 연구소 신설 및 평가에 따른 연구소 폐지
54. Eco한우연구소	**54. 삭제**	
55~63. *(생략)*	55~63. *(현행과 같음)*	
<신 설>	**64. 미술보존복원연구소**	
<신 설>	**부칙(2026.00.0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붙임7] 영남대학교 교직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16호의안 관련)

현 행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3.12.20.	개 정 안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6.00.00.	개정 사유
제4조(장기근속수당) ①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보수 지급일에 **별표2**에 의하여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 ② *(생략)*	제4조(장기근속수당) ①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보수 지급일에 **별표2**에 의하여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 ② *(현행과 같음)*	2025학년도 임금협약(2026.1.2.)에 따른 후속조치로 장기근속수당표 개정
<신 설>	**부칙(2026.00.0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별표2] <현행>

장기근속수당 지급표

구분	책정액
20년 이상	
15년 이상 ~ 20년 미만	
10년 이상 ~ 15년 미만	
9년 이상 ~ 10년 미만	
8년 이상 ~ 9년 미만	
7년 이상 ~ 8년 미만	
6년 이상 ~ 7년 미만	
5년 이상 ~ 6년 미만	
4년 이상 ~ 5년 미만	
3년 이상 ~ 4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별표2] <개정안>

장기근속수당 지급표

구분	책정액
30년 이상	
20년 이상 ~ 30년 미만	
15년 이상 ~ 20년 미만	
10년 이상 ~ 15년 미만	
9년 이상 ~ 10년 미만	
8년 이상 ~ 9년 미만	
7년 이상 ~ 8년 미만	
6년 이상 ~ 7년 미만	
5년 이상 ~ 6년 미만	
4년 이상 ~ 5년 미만	
3년 이상 ~ 4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간서명	이사장	한 래 숙	이 사	김 진 [illegible]	이 사	[illegible]

[붙임8] 영남대학교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제19호의안 관련)

현 행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4.8.21.	개 정 안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6.00.00.	개정 사유
제2조(구분 및 적용범위) ① 교원은 정년계열전임교원, 비정년계열전임교원, 석좌교수, 명예교수, 초빙교원, 객원교원, 겸임교원, 외래교원, 임상교원, 연구교원, 강사, 조교로 구분한다.	제2조(구분 및 적용범위) ① 교원은 정년계열전임교원, 비정년계열전임교원, 석좌교수, 명예교수, 초빙교원, 객원교원, 겸임교원, 외래교원, 임상교원, 연구교원, **JA교원,** 강사, 조교로 구분한다.	교원의 한 종류로 JA교원 추가
② 이 규정은 정년계열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하고, 비정년계열전임교원, 석좌교수, 명예교수, 초빙교원, 객원교원, 겸임교원, 외래교원, 임상교원, 연구교원, 강사, 조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이 규정은 정년계열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하고, 비정년계열전임교원, 석좌교수, 명예교수, 초빙교원, 객원교원, 겸임교원, 외래교원, 임상교원, 연구교원, **JA교원,** 강사, 조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JA교원 제도를 JA교원 인사규정으로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③ 비정년계열전임교원은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원, 교육중점 전임교원, 외국인교원을 말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의2(JA교원) **① 총장은 우리 대학교의 전임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JA(Joint Appointment)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4조의2(JA교원) ① **<삭 제>**	제2조제2항에서 JA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함에 따른 조문 삭제
1. JA교원 부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1. **<삭 제>**	
2. 강의, 연구과제 등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삭 제>**	
3.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삭 제>**	
② 전임교원의 JA교원 임용절차와 직무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② **<삭 제>**	
<신 설>	**부칙(2026.00.0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

간서명	이사장	한재수	이 사	김진성	이 사	

[붙임9] 영남대학교 겸임교원 임용규정 개정(안)
(제20호의안 관련)

현 행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4. 8.21.	개 정 안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6.00.00.	개정 사유
제3조의2(JA교원) ① 총장은 우리 대학교의 겸임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JA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3조의2(JA교원) ① <삭제>	JA교원 인사규정 제정에 따른 JA교원 일원화 운용을 위한 조문 삭제
1. 산학융합 교육 및 연구 등을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삭제>	
2.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삭제>	
② 겸임교원의 JA교원 임용절차와 직무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② <삭제>	
<신 설>	부칙(2026.00.0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

간서명	이사장	한재술	이 사	심진보	이 사	

[붙임10] 영남대학교 JA교원 인사규정 제정(안)
(제21호의안 관련)

영남대학교 JA교원 인사규정

제정 2026.00.00. 법인이사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남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Joint Appointment교원(이하 "JA교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부기관"이란 우리 대학교와 공동으로 교육·연구·산학협력 등을 수행하기 위한 타 대학교, 연구기관, 정부 및 공공기관, 산업체 등을 말한다.
2. "학제융합JA교원"이란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이 우리 대학교에서 학제 간 융복합 교육 및 연구를 위해 2개 이상의 대학(원), 학부(과)(이하 "학과"라 한다)에 공동 소속으로 임용되는 교원을 말한다.
3. "대외협력JA교원"이란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이 특별임무 수행을 위해 외부기관에 공동 소속으로 임용되는 교원을 말한다.
4. "학연산JA교원"이란 외부기관에 재직하면서 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을 위해 우리 대학교에 공동 소속으로 임용되는 비전임교원을 말한다.
5. "원소속학과"란 교원의 임용 당시 소속학과 또는 소속 변경이 된 경우에는 변경된 소속의 학과를 말한다.
6. "참여학과"란 교원이 원소속학과 외 JA교원으로서 소속된 학과를 말한다.

제2장 학제융합JA교원

제3조(구분)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이 학제융합JA교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업무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1. 원소속학과와 참여학과에서 균등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학제융합JA교원
2. 원소속학과와 참여학과에서 균등한 책임과 권한이 있으나 참여학과의 인사 관련 사항은 참여학과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는 학제융합JA교원
3. 참여학과의 강의와 논문심사에 참여하고, 참여학과의 학생·논문지도는 참여학과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참여학과의 인사 관련 사항은 참여할 수 없는 학제융합JA교원
4. 참여학과의 강의·연구에 참여하고, 참여학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참여학과에서 논문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학제융합JA교원

간서명	이사장	황 래 수	이 사	김 정 섭	이 사	

5. 참여학과의 연구에 참여하고, 참여학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참여학과에서 강의와 논문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학제융합JA교원

제4조(재직교원의 임용절차) ① 재직 중인 전임교원을 학제융합JA교원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참여학과는 원소속학과장의 동의를 받아 [별표 2]의 신청서를 인사관리처에 제출하여 총장에게 임용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필요 시 원소속학과장 및 참여학과장과 협의를 거쳐 학제융합JA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제5조(신규임용 절차) ① 학제융합JA교원을 신규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원소속학과와 참여학과는 공동으로 교원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원소속학과는 참여학과의 동의를 받아 총장에게 신규임용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신규채용 전형 단계별 심사위원회에는 원소속학과와 참여학과 소속 교원을 심사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 지침」을 따른다.

제6조(면직) 학제융합JA교원 임용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임용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학제융합JA교원을 면직할 수 있다.

제7조(철회) 학제융합JA교원의 임용기간 중 임용 철회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참여학과장이 [별표 2]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사관리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업적평가) 학제융합JA교원에 대한 업적평가는 원소속학과에서 실시한다.

제9조(승진 및 재임용) 학제융합JA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은 원소속학과 기준을 적용한다.

제10조(행정지원) 학제융합JA교원에 대한 연구공간, 연구비, 연구년제, 조교 등의 행정지원은 원소속학과에서 담당하되, 참여학과에 관련된 사항은 참여학과에서 담당한다.

제11조(불이익처분 금지) 학제융합JA교원에 대하여 학제융합JA교원을 사유로 업적평가, 보수, 인사 등 신분상에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

제3장 대외협력JA교원

제12조(외부기관으로 임용)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이 외부기관에 JA교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전임교원은 원소속학과장의 동의를 받아 [별표 3]의 신청서를 인사관리처에 제출하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외협력JA교원으로 임용한다.

제13조(면직) 대외협력JA교원의 임용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임용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대외협력JA교원을 면직할 수 있다.

제14조(철회) 대외협력JA교원의 임용기간 중 임용철회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전임교원은 [별표 3]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소속학과장을 통하여 인사관리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업적평가, 승진 및 재임용, 불이익처분 금지) 대외협력JA교원에 대한 업적평가, 승진 및 재임용, 불이익처분 금지는 제8조, 제9조, 제11조를 준용한다.

제4장 학연산JA교원

제16조(자격) 학연산JA교원 자격요건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17조(결격사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리 대학교 학연산JA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제18조(신규임용 절차) ① 학연산JA교원을 신규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과장은 [별표 4] 학연산JA교원 충원요청서를 작성하여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총장에게 신규임용 요청하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본부, 부속·부설기관, 사업단(센터)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이 [별표 4] 학연산JA교원 충원요청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신규임용 요청하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학연산JA교원의 신규임용은 해당 학과에서 선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법으로 채용을 진행하며, [별표 5] 학연산JA교원 임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과의 교수회의를 거쳐 임용후보자를 추천하고 학장의 제청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다만, 본부, 부속·부설기관, 사업단(센터)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이 [별표 5] 학연산JA교원 임용 신청서 작성하여 임용후보자를 추천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③ 총장은 임용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구비서류) ① 학연산융합JA교원을 신규 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지원서 1부
2. [별표 5]의 학연산JA교원 임용신청서 1부(필요시 외부기관 대표 동의서 별도 첨부)
3. 학력증명서 각 1부
4. 재직(경력)증명서 각 1부
5. 학부(과) 교수회의록 1부
6. 기타 임용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제20조(임용기간) ① 학연산JA교원은 매학기 초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용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학연산JA교원의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필요한 경우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21조(임용계약) ① 학연산JA교원의 임용계약은 개별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용계약에는 소속, 임용기간, 임무, 처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2조(임무) ① 학연산JA교원은 우리 대학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학연산JA교원의 강의시간은 주당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시간까지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제23조(재임용) ① 학연산JA교원에 대한 재임용은 임용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② 학연산JA교원의 재임용은 학과장이 외부기관 대표자의 동의와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재임용 추천하고 학장의 제청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다만, 본부, 부속·부설기관, 사업단(센터)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이 해당 외부기관 대표자의 동의를 거쳐 재임용 추천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③ 학연산JA교원을 재임용하는 때에는 임용기간 중의 교육실적, 연구실적, 대학발전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24조(면직) ① 학연산JA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총장은 임용기간 중이라도 면직할 수 있다.

1. 우리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임용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우리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27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외부기관에서의 직을 상실한 경우 또는 겸직 허가가 취소된 경우

② 학연산JA교원이 재임용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제25조(철회) 학연산JA교원의 임용기간 중 임용 철회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학연산JA교원 또는 소속학과장이 [별표 5]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사관리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처우) ① 학연산JA교원이 강의·연구·산학협력 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강의료·연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업무상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제규정을 준용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부 칙 (2026.00.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우리 대학교 JA교원 임용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임용된 학제융합JA교원은 이 규정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별표1] 학제융합JA교원의 구분

학제융합JA교원의 구분

구 분		JA교원 (제3조제1호형)		JA교원 (제3조제2호형)		JA교원 (제3조제3호형)		JA교원 (제3조제4호형)		JA교원 (제3조제5호형)	
		원소속 학과	참여 학과	원소속 학과	참여 학과	원소속 학과	참여 학과	원소속 학과	참여 학과	원소속 학과	참여 학과
강 의		○	○	○	○	○	○	○	○	○	△
연 구		○	○	○	○	○	○	○	○	○	○
학생지도		○	○	○	○	○	△	○	×	○	×
논문지도		○	○	○	○	○	△	○	×	○	×
논문심사		○	○	○	○	○	○	○	△	○	△
행사참여		○	○	○	△	○	△	○	△	○	△
교수회의참석	교원인사	○	○	○	△	○	×	○	×	○	×
	교육과정개편	○	○	○	○	○	△	○	×	○	×
	내규제정	○	○	○	○	○	△	○	×	○	×
	기타 의견 개진	○	○	○	○	○	○	○	△	○	△
비 고		○: 참여, △: 참여학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참여, ×: 불참여									

※ JA교원 임용 요청 전, 사전에 JA교원의 유형 및 업무 범위(△로 표시된 업무 관련 사항 포함)를 원소속학과와 참여학과가 협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별표2] 학제융합JA교원 임용(철회) 신청서

학제융합JA교원 임용(철회) 신청서

<table>
<tr><td rowspan="2">신청자</td><td>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소속</td><td></td><td>직위</td><td></td></tr>
<tr><td rowspan="4">신청내용</td><td rowspan="3">JA교원 임용( )</td><td colspan="3">임용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td></tr>
<tr><td colspan="3">제3조제1호( ) 제3조제2호( )
제3조제3호( ) 제3조제4호( )
제3조제5호( )</td></tr>
<tr><td colspan="3">참여학과:
원소속학과:</td></tr>
<tr><td>JA교원 철회( )</td><td colspan="3">철회일자: 20 년 월 일</td></tr>
<tr><td>신청사유</td><td colspan="4">※ JA교원 임용 시 참여학과에서의 역할 상세기술
※ JA교원 임용 철회 사유 상세기술</td></tr>
</table>

본인은 위와 같이 학제융합JA교원 (임용 / 철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인)

확인자 원소속학부(과)장 (인)

확인자 참여학부(과)장 (인)

영남대학교 총장 귀하

간서명	이사장	한 래 수	이 사	김 신	이 사	

[별표3] 대외협력JA교원 임용(철회) 신청서

대외협력JA교원 임용(철회) 신청서

<table>
<tr><td rowspan="2">신청자</td><td>기관/소속</td><td></td><td>성명</td><td></td></tr>
<tr><td>직위</td><td></td><td>임용일자</td><td></td></tr>
<tr><td rowspan="4">신청내용</td><td rowspan="2">JA교원 임용( )</td><td colspan="3">외부기관명(대학 등):</td></tr>
<tr><td colspan="3">참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td></tr>
<tr><td rowspan="2">JA교원 철회( )</td><td colspan="3">외부기관명(대학 등):</td></tr>
<tr><td colspan="3">철회일자: 20 년 월 일</td></tr>
<tr><td>신청사유</td><td colspan="4">※ 외부기관(대학 등) 간 JA교원으로서의 역할 상세 기술
※ JA교원 철회 시 상세 사유 기술</td></tr>
<tr><td colspan="5">본인은 위와 같이 대외협력JA교원 (임용 / 철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인)
확인자 원소속학부(과)장 (인)

영남대학교 총장 귀하</td></tr>
</table>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별표4] 학연산JA교원 충원요청서

학연산JA교원 충원요청서

<table>
<tr><td>요청인원</td><td colspan="4">0명</td></tr>
<tr><td>임용예정기간</td><td colspan="4">20OO.OO.01. ~ 20OO.OO.31. (1년)</td></tr>
<tr><td colspan="5">충원 필요성 및 요청 사유</td></tr>
<tr><td colspan="5">- 구체적으로 작성
- OOOOOOOO
- OOOOOOOO</td></tr>
<tr><td colspan="5">활용 계획(교육)</td></tr>
<tr><td rowspan="2">전공분야</td><td rowspan="2">담당과목</td><td colspan="2">학 점(주당시수)</td><td rowspan="2">비 고</td></tr>
<tr><td>1학기</td><td>2학기</td></tr>
<tr><td rowspan="6">국문:

영문:</td><td></td><td>( )</td><td>( )</td><td rowspan="6"></td></tr>
<tr><td></td><td>( )</td><td>( )</td></tr>
<tr><td></td><td>( )</td><td>( )</td></tr>
<tr><td></td><td>( )</td><td>( )</td></tr>
<tr><td>계</td><td>( )</td><td>( )</td></tr>
<tr><td colspan="5">활용 계획(연구, 산학협력 등)</td></tr>
<tr><td>활 용 계 획</td><td colspan="4">- 구체적으로 작성
- OOOOOOOO
- OOOOOOOO</td></tr>
<tr><td colspan="5">위와 같이 학연산JA교원 충원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학부(과)장 (인)

학장(또는 기관장) (인)

별첨 학부(과)교수 회의록 또는 기관 회의록 1부</td></tr>
</table>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별표5] 학연산JA교원 임용(철회) 신청서

학연산JA교원 임용(철회) 신청서

신청자	외부기관/소속		성명	
	직위		임용일자	
신청내용	JA교원 임용( )	영남대학교 희망학과/부서:		
		참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JA교원 철회( )	영남대학교 희망학과/부서:		
		철회일자: 20 년 월 일		
신청사유	※ 학연산JA교원 임용시 역할 및 기대효과 상세 기술 ※ JA교원 철회 시 상세 사유 기술			

본인은 위와 같이 학연산JA교원 (임용 / 철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추천자 임용소속 학과장 (인)

외부기관 대표 (인)

영남대학교 총장 귀하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붙임11] 영남대학교 외국인교원 인사규정 개정(안)
(제22호의안 관련)

현 행 직권 수정 2023. 2.28.	개 정 안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6.00.00.	개정 사유
제29조(승급시기) 교육중점 외국인교원 및 교육·연구중점 외국인교원의 승급 시기는 3월 1일과 9월 1일로 하되, 해당 교원의 재임용일에 한다.	제29조(승급시기) *(현행과 같음)*	
제30조(승급기간) ① 제23조의 외국인교원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2년으로 임용된 제23조의 외국인교원의 경우에는 해당 교원의 재임용 시 2호봉을 승급한다.	제30조(승급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외국인교원이 제31조 제2호의 제한기간과 직위해제기간 또는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교원이 제31조 제2호의 제한기간과 직위해제기간 또는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휴직한 경우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육아휴직기간(최초 1년) 승급기간에 산입
제31조(승급의 제한) 제23조의 외국인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승급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가. 정직 18월 나. 감봉 12월 다. 견책 6월	제31조(승급의 제한) 제23조의 외국인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승급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제30조 제2항의 단서 조항 제외)** 중에 있는 경우 2. *(현행과 같음)*	육아휴직기간(최초 1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므로 승급의 제한에 해당 없음
<신 설>	**부칙(2026.00.0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붙임12] 영남대학교 2026.03.01.자 전임교원 신규임용(안)
(제23호의안 관련)

연번	성명	생년월일	학부(과)·교실	직위	호봉	발령사항		
						내역	임용기간	발령일
1	박민용		건축학부	조교수	1호봉	조교수에 임함	2026.3.1. ~ 2029.2.28.	2026.3.1.
2	방희승		기계공학부	조교수	1호봉			
3	류시준		기계공학부	조교수	1호봉			
4	김태엽		기계공학부	조교수	1호봉			
5	최종휘		신소재공학부	조교수	1호봉			
6	김건우		화학공학부	조교수	1호봉			
7	조정환		컴퓨터학부	조교수	9호봉			
8	박예린		심리학과	조교수	1호봉			
9	최민영		사회학과	조교수	1호봉			
10	민병운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조교수	7호봉			
11	이은미		미생물학교실	조교수	1호봉			
12	김선오		내과학교실	조교수	6호봉			
13	정준창		내과학교실	조교수	5호봉			
14	이연지		내과학교실	조교수	3호봉			
15	백종규		신경과학교실	조교수	6호봉			
16	김진우		정신건강의학교실	조교수	4호봉			
17	김송미		의류패션학과	조교수	1호봉			
18	서지은		중국언어문화학과	조교수	1호봉			
19	안창인		형법(실무)	조교수	9호봉			
20	한동훈		헌법(이론)	조교수	18호봉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붙임13] 영남대학교 교원 임용 보고의 건
(보고사항 제1호 관련)

임용 유형	구분	성명	생년월일	학부(과)	직위	발령사항		비고 (국적)
						내역	발령일자	
면직	연구중점	마하다달카르만지 니아닐		신소재공학부	조교수	의원면직	2025.11.14.	
		팔라니사미고타미		화학공학부	조교수	의원면직	2026.1.15.	
		비핀쿠마		물리학과	조교수	의원면직	2026.1.20.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붙임14] 영남이공대학교 직원인사 규정 개정(안)
(제26호의안 관련)

현 행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5.12.17.	개 정 안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0000.00.00.	개정 사유
제4조(직급구분) 전 제3조 직원의 각 직군·직렬별 직급은 **별표 1-1**, 1-2와 같다.	제4조(직급구분) 전 제3조 직원의 각 직군·직렬별 직급은 **별표 1-1**, 1-2와 같다.	수석급 추가
제5조(용어의 정의) ① <생략>	제5조(용어의 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본 조 제1항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턴직원"이란 신규임용되는 일반직원으로 1년간 근무평가로 계속 임용여부의 평가를 받는 직원 2. "원급"이란 일반직원의 계급으로 신규임용시 부여되는 직급(인턴직원 포함) 3. "선임급"이란 원급에서 승진임용시 부여되는 직급 4. "책임급"이란 선임급에서 승진임용시 부여되는 직급	② 본 조 제1항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턴직원"이란 신규임용되는 일반직원으로 1년간 근무평가로 계속 임용여부의 평가를 받는 직원 2. "원급"이란 일반직원의 계급으로 신규임용시 부여되는 직급(인턴직원 포함) 3. "선임급"이란 원급에서 승진임용시 부여되는 직급 4. "책임급"이란 선임급에서 승진임용시 부여되는 직급	
<신설>	**5. "수석급"이란 책임급에서 승진임용시 부여되는 직급**	수석급 정의 추가
제22조(승진 소요 최저년수) ① 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당해직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행정직, 기술직 및 사서직 **<신설>** **가.** 선임급 : 9년 **나. 원급 : 9년** **다.** 삭제 2. 운영직 가.~라. <생략> ② <생략>	제22조(승진 소요 최저년수) ① 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당해직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행정직, 기술직 및 사서직 **가. 책임급 : 9년** **나.** 선임급 : 9년 **다. 원급 : 6년** **라.** 삭제 2. 운영직 가.~라.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원급 승진 소요 년수 변경
<신설>	**부 칙 (0000.00.0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현행】

[별표 1-1]

행정직, 기술직 및 사서직 직급표

직 군	직	급	
행정직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직			
사서직			

【개정안】

[별표 1-1]

행정직, 기술직 및 사서직 직급표

직 군	직	급		
행정직	수석급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직				
사서직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붙임15] 영남이공대학교 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
(제27호의안 관련)

현 행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0.02.05.	개 정 안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0000.00.00.	개정 사유
제5조(직급수당) ① 직급수당의 지급월액은 **별표 1** 및 별표2의 구분에 의하여 지급하되, 행정직 직원의 직급수당은 매년 실시하는 급호평정 결과에 따라 직급수당 급호별(1호~3호)로 차등 지급한다.	제5조(직급수당) ① 직급수당의 지급월액은 **별표 1** 및 별표2의 구분에 의하여 지급하되, 행정직 직원의 직급수당은 매년 실시하는 급호평정 결과에 따라 직급수당 급호별(1호~3호)로 차등 지급한다.	(별표1) 변경 및 사무국장 직급수당 관련 문구 수정
② 단, 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직급수당을 예외로 지급한다. **1. 사무국장은 보직재임 기간과 보직해임 후 근무평정 실시 전까지는 책임급 1호의 직급수당을 지급한다.**	② 단, 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직급수당을 예외로 지급한다. **1. 사무국장이 수석급일 경우 수석급 직급수당을 지급하고, 책임급일 경우 보직재임 기간과 보직해임 후 근무평정 실시 전까지는 책임급 1호의 직급수당을 지급한다.**	
2.~4. <생략>	2.~4. <현행과 같음>	
<신설>	**부 칙 (0000.00.0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현행】

[별표1] 행정직원 봉급표

1. 본봉

호봉	책정액	호봉	책정액
1		26	
2		27	
3		28	
4		29	
5		30	
6		31	
7		32	
8		33	
9		34	
10		35	
11		36	
12		37	
13		38	
14		39	
15		40	
16		41	
17		42	
18		43	
19		44	
20		45	
21		46	
22		47	
23		48	
24		49	
25		50	

2. 직급수당

직급		책정액
책임급	1호	
	2호	
	3호	
선임급	1호	
	2호	
	3호	
원급	1호	
	2호	
	3호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개정안】

[별표1] 행정직원 봉급표

1. 본봉

호봉	책정액	호봉	책정액
1		26	
2		27	
3		28	
4		29	
5		30	
6		31	
7		32	
8		33	
9		34	
10		35	
11		36	
12		37	
13		38	
14		39	
15		40	
16		41	
17		42	
18		43	
19		44	
20		45	
21		46	
22		47	
23		48	
24		49	
25		50	

2. 직급수당

직급		책정액
수석급		
책임급	1호	
	2호	
	3호	
선임급	1호	
	2호	
	3호	
원급	1호	
	2호	
	3호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붙임16] 영남이공대학교 연봉계약제 일반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
(제28호의안 관련)

현 행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1.10.20.	개 정 안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0000.00.00.	개정 사유
제5조(연봉책정) ① 연봉계약제 일반직원의 연봉은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매년 정기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책정한다. ② 기본연봉은 초임기본연봉에 직급별 부과 금액으로 책정한다. 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성과연봉 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정기인사평정 결과에 따라 6등급(A~F)으로 구분된 성과연봉 지급률(별표 4)을 곱하여 산정한다. 단, 인턴기간 이후 임용전환 된 직원의 성과연봉 등급은 정기인사평정 실시 전까지 E등급으로 한다. ④ 인턴직원의 연봉은 초임기본연봉 및 제수당으로 한다.	제5조(연봉책정) ① 연봉계약제 일반직원의 연봉은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매년 정기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책정한다. ② 기본연봉은 초임기본연봉에 직급별 부과 금액으로 책정한다. 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성과연봉 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정기인사평정 결과에 따라 6등급(A~F)으로 구분된 성과연봉 지급률(별표 4)을 곱하여 산정한다. 단, 인턴기간 이후 임용전환 된 직원의 성과연봉 등급은 정기인사평정 실시 전까지 E등급으로 한다. ④ 인턴직원의 연봉은 초임기본연봉 및 제수당으로 한다.	(별표2) 변경
<신설>	**부 칙 (0000.00.0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간서명	이사장	한재수	이 사	김찬	이 사	

【현행】

[별표 2] 직급별 기본연봉 책정표

직급	책정액		비고
책임급	7년차 이상		
	4~6년차		
	3년차 이하		
선임급	7년차 이상		
	4~6년차		
	3년차 이하		
원급	7년차 이상		
	4~6년차		
	3년차 이하		

※ 초임기본연봉 + 직급별 부가금액

【개정안】

[별표 2] 직급별 기본연봉 책정표

직급	책정액		비고
수석급			
책임급	7년차 이상		
	4~6년차		
	3년차 이하		
선임급	7년차 이상		
	4~6년차		
	3년차 이하		
원급	7년차 이상		
	4~6년차		
	3년차 이하		

※ 초임기본연봉 + 직급별 부가금액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붙임17] 영남이공대학교 직제 규정 개정(안)
(제29호의안 관련)

현 행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5.12.17.	개 정 안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0000.00.00.	개정 사유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제4조(교직원) 우리 대학교는 총장 외에 다음 각 호의 교원과 직원을 둔다. 1. <생략> 2. 직원은 행정직, 기술직, 사서직, 운영직으로 구분하고 그 직급은 **별표1**과 같다. 3.~6. <생략>	제4조(교직원) 우리 대학교는 총장 외에 다음 각 호의 교원과 직원을 둔다. 1. <현행과같음> 2. 직원은 행정직, 기술직, 사서직, 운영직으로 구분하고 그 직급은 **별표1**과 같다. 3.~6. <현행과 같음>	직원직급표 변경 (수석급 신설)
제 3 장 대학본부	제 3 장 대학본부	
제7조(대학본부) ① 대학본부에 입학본부, 학사운영처, 취업지원처, 학생복지처, 사무국을 둔다. ② 입학본부장, 학사운영처장, 취업지원처장, 학생복지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사무국장은 **책임급** 직원으로 보하며, 총장의 명을 받아서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부서내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⑦ <생략>	제7조(대학본부) ① 대학본부에 입학본부, 학사운영처, 취업지원처, 학생복지처, **일학습병행운영처, 국제처,** 사무국을 둔다. ② 입학본부장, 학사운영처장, 취업지원처장, 학생복지처장, **일학습병행운영처장, 국제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사무국장은 **책임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총장의 명을 받아서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부서내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⑦ <현행과 같음>	일학습병행 교육지원처, 국제처 신설
제9조(학사운영처) ① 학사운영처에 학사운영팀, 교육혁신인재개발원, **일학습병행지원센터,** 성인학습지원센터를 둔다. ②~④ <생략>	제9조(학사운영처) ① 학사운영처에 학사운영팀, 교육혁신인재개발원, 성인학습지원센터를 둔다. ②~④ <현행과 같음>	직제 신설에 따른 센터 및 팀 삭제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현 행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5.12.17.	개 정 안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0000.00.00.	개정 사유
⑤ 일학습병행지원센터에는 일학습병행지원팀을 둔다. ⑥~⑨ <생략>	**⑤ <삭제>** ⑥~⑨ <현행과 같음>	
제10조(취업지원처) ① 취업지원처에 취업지원팀, 현장실습지원센터, **청년-기업 취업매칭센터**를 둔다. ②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초빙교원으로** 보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⑥ <생략>	제10조(취업지원처) ① 취업지원처에 취업지원팀,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둔다 ②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⑨ <현행과 같음>	직제 신설에 따른 센터 삭제
<신설>	**제10조의3(일학습병행운영처) ① 일학습병행운영처에 일학습병행교육지원팀, 청년-기업매칭센터를 두고, 청년-기업매칭센터에는 청년-기업매칭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초빙교원으로 보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팀장은 선임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일학습병행 운영처 신설에 따른 조 신설
<신설>	**제10조의4(국제처) ① 국제처에 글로벌교류팀, 글로벌입학팀, 글로벌교육·취업팀, 한국어어학센터, YNC청해진추진센터를 둔다.** **②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팀장은 선임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④ 국제처에 처장은 산학협력중**	국제처 신설에 따른 조 신설

간서명	이사장	한재수	이 사	김건삼	이 사	김홍대

현 행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5.12.17.	개 정 안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0000.00.00.	개정 사유
	점교원 또는 외부인사를 임용할 수 있다. **⑤ 국제처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4 장 대학·학부·학과(계열)	제 4 장 대학·학부·학과(계열)	
제13조(대학·학부·학과(계열)) ① <생략> ② 학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학부·학과(계열)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단, 국제대학의 학장은 산학협력중점교원 또는 외부인사를 임용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학칙 제4조에 명시한 대학·학부·학과(계열) 외에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하여 국제대학을 별도로 둔다.** **1. 삭제** **2. 국제대학에는 국제협력팀, IC운영팀, 글로벌교양학과, YNC청해진추진센터 및 한국어 어학센터를 두고, 한국어 어학센터에는 유학생지원팀을 둔다. 센터장은 국제대학 학장이 겸직하고, 팀장은 선임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3. 국제대학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3조(대학·학부·학과(계열)) ① <생략> ② 학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학부·학과(계열)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삭제>**	국제대학 직제 개편에 따른 자구 수정
<신설>	**제31조의2(요양보호사교육원) ①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에서 노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 신설 (요양보호사 교육원 신설)

간서명	이사장	한재숙	이 사	김진석	이 사	

현 행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5.12.17.	개 정 안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0000.00.00.	개정 사유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하여 요양보호사교육원을 둔다. **② 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③ 요양보호사교육원에 요양보호사교육팀을 두고 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선임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④ 요양보호사교육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1조의2(기타 부설기관) ① 우리 대학교에 필요한 기타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설기관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1조의3**(기타 부설기관) ① 우리 대학교에 필요한 기타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설기관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 변경
<신설>	**부 칙 (0000.00.00.)** **제 1 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현행】

[별표 1]

직 원 직 급 표

1. 행정직
   - 책임급
   - 선임급
   - 원 급
2. 기술직
3. 사서직
4. 운영직
   - 선임급
   - 원 급

【개정안】

[별표 1]

직 원 직 급 표

1. 행정직
   - <u>수석급</u>
   - 책임급
   - 선임급
   - 원 급
2. 기술직
3. 사서직
4. 운영직
   - 선임급
   - 원 급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붙임18] 영남이공대학교 비정년계열전임교원 계약임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30호의안 관련)

<table>
<tr><th>현 행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5.02.12.</th><th>개 정 안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0000.00.00.</th><th>개정
사유</th></tr>
<tr><td>제 9 조(재임용) ①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된 교원은 계약기간 동안 <u>별표</u>의 재임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재임용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② 재임용 절차는 우리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40조를 준용하되 <u>별표</u>의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교원의 재임용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단, 외국인교원은 제외한다.
1.~2. <생략>
3. 업적평가서(교육중점교원 및 강의전담교원 : 교육업적평가서, 산학협력중점교원 : 산학협력활동보고서) 1부</td><td>제 9 조(재임용) ①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된 교원은 계약기간 동안 <u>별표</u>의 재임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재임용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② 재임용 절차는 우리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40조를 준용하되 <u>별표</u>의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교원의 재임용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단, 외국인교원은 제외한다.
1.~2. <현행과 같음>
3. 업적평가서(교육중점교원<u>, 실무교원</u> 및 강의전담교원 : 교육업적평가서, 산학협력중점교원 : 산학협력활동보고서) 1부</td><td>실무교원 누락에 따른 명시</td></tr>
<tr><td>[별표] 재임용 요건
1. 업적별 최저충족 기준
<table><tr><th>구분</th><th>기간</th><th>교육 업적</th><th>봉사 업적</th><th>연구 업적</th><th>비고</th></tr><tr><td>교육중점교원</td><td>1년</td><td>100점</td><td><u>40점</u></td><td>100점</td><td>강의 및 학생지도 중심</td></tr><tr><td>실무교원</td><td>1년</td><td>100점</td><td><u>40점</u></td><td>-</td><td>실무 교과목 강의 중심</td></tr><tr><td>산학협력중점 교원</td><td>1년</td><td>-</td><td>100점</td><td>-</td><td>산학협력 및 취업활동 중심</td></tr><tr><td>외국인교원</td><td>1년</td><td>80점</td><td>-</td><td>-</td><td>외국어 강의활동 중심</td></tr><tr><td>강의전담교원</td><td>1년</td><td>90점</td><td>-</td><td>-</td><td>강의활동 중심</td></tr></table>▪ 교육업적 평가기준
<생략>
▪ 봉사업적 평가기준
- 교육중점교원: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3(단, 보직활동, 위원회활동, 재정지원사업활동, 입시활동, 산업체현장연수(4주이상) 및 교원창업활동은</td><td>[별표] 재임용 요건
1. 업적별 최저충족 기준
<table><tr><th>구분</th><th>기간</th><th>교육 업적</th><th>봉사 업적</th><th>연구 업적</th><th>비고</th></tr><tr><td>교육중점교원</td><td>1년</td><td>100점</td><td><u>70점</u></td><td>100점</td><td>강의 및 학생지도 중심</td></tr><tr><td>실무교원</td><td>1년</td><td>100점</td><td><u>70점</u></td><td>-</td><td>실무 교과목 강의 중심</td></tr><tr><td>산학협력중점 교원</td><td>1년</td><td>-</td><td>100점</td><td>-</td><td>산학협력 및 취업활동 중심</td></tr><tr><td>외국인교원</td><td>1년</td><td>80점</td><td>-</td><td>-</td><td>외국어 강의활동 중심</td></tr><tr><td>강의전담교원</td><td>1년</td><td>90점</td><td>-</td><td>-</td><td>강의활동 중심</td></tr></table>▪ 교육업적 평가기준
<현행과 같음>
▪ 봉사업적 평가기준
- 교육중점교원<u>, 실무교원</u>: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3(단, 보직활동, 위원회활동, 재정지원사업활동, 입시활동, 산업체현장연수(4주이상) 및 교</td><td>교육중점교원 및 실무교원의 재임용 요건 기준(봉사업적)을 강화

실무교원 누락에 따른 명시</td></tr>
</table>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table>
<tr><th>현 행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5.02.12.</th><th>개 정 안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0000.00.00.</th><th>개정
사유</th></tr>
<tr><td>제외함)
- <생략>
▪ 연구업적 평가기준
- 교육중점교원: <u>최초 재임용 평가 시에 한하여 평가하며,</u> 교원업적평가 규정 별표 1의 국내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이상 게재 논문으로 평가하고 연구실적 중 <u>주저자</u> 논문이 1편 이상이어야 함(단, 예·체능계열(미술/디자인분야 포함)은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1-2와 별표 1-3으로 평가함)

<u><신설></u></td><td>원창업활동은 제외함)
- <현행과 같음>
▪ 연구업적 평가기준
- 교육중점교원: 교원업적평가 규정 별표 1의 국내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이상 게재 논문으로 평가하고 연구실적 중 <u>주저자(공동 제1저자, 교신저자 포함)</u> 논문이 1편 이상이어야 함(예·체능계열(미술/디자인분야 포함)은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1-2와 별표 1-3으로 평가함)

<u>부 칙(0000.00.00)</u>
<u>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u>
<u>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교원은 [별표] 재임용 요건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으로 재임용 심사를 받으며, 재임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업적별 최저충족 기준</u>
<table><tr><th>구분</th><th>기간</th><th>교육업적</th><th>봉사업적</th><th>연구업적</th><th>비고</th></tr><tr><td>교육중점교원</td><td>1년</td><td>100점</td><td>40점</td><td>100점</td><td>강의 및 학생지도 중심</td></tr><tr><td>실무교원</td><td>1년</td><td>100점</td><td>40점</td><td>-</td><td>실무 교과목 강의 중심</td></tr><tr><td>산학협력중점교원</td><td>1년</td><td>-</td><td>100점</td><td>-</td><td>산학협력 및 취업활동 중심</td></tr><tr><td>외국인교원</td><td>1년</td><td>80점</td><td>-</td><td>-</td><td>외국어 강의활동 중심</td></tr><tr><td>강의전담교원</td><td>1년</td><td>90점</td><td>-</td><td>-</td><td>강의활동 중심</td></tr></table><u>2. 교육업적, 봉사업적, 연구업적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단, 교육중점교원의 연구업적은 최초 재임용 평가 시에 한하여 평가한다.</u></td><td>연구업적 평가를 재임용 시마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저자에 대한 범위를 명시

시행일 및 경과조치 사항 명시</td></tr>
</table>

간서명	이사장	한재수	이 사	김진삼	이 사	김효대

[붙임19] 영남이공대학교 교원인사 규정 개정(안)
(제31호의안 관련)

현 행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5.02.12.	개 정 안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0000.00.00.	개정 사유
제2조(구분 및 적용범위) ① 교원은 정년계열전임교원, 비정년계열전임교원, 명예교수, 초빙교원, 객원교원, 겸임교원, 외래교원, 강사로 구분한다. ② <생략> ③ 이 규정은 연봉계약제전임교원을 제외한 정년계열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하고, 연봉계약제전임교원 및 비정년계열전임교원, 명예교수, 초빙교원, 객원교원, 겸임교원, 외래교원, 강사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조(구분 및 적용범위) ① 교원은 정년계열전임교원, 비정년계열전임교원, 명예교수, 초빙교원, 객원교원, 겸임교원, **JA교원,** 외래교원, 강사로 구분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이 규정은 연봉계약제전임교원을 제외한 정년계열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하고, 연봉계약제전임교원 및 비정년계열전임교원, 명예교수, 초빙교원, 객원교원, 겸임교원, **JA교원,** 외래교원, 강사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영남이공대학교 JA교원 인사규정 제정에 따른 교원의 종류 추가
<신설>	**부 칙 (0000.00.0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0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붙임20] 영남이공대학교 JA교원 인사규정 제정(안)
(제32호의안 관련)

영남이공대학교 JA교원 인사규정

학 과 장 회 통과일자 : 2026년 01월 15일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 0000년 00월 00일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영남이공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Joint Appointment교원(이하 "JA교원"이라 한다) 임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부기관"이란 우리 대학교와 공동으로 교육·연구·산학협력 등을 수행하기 위한 타 대학교, 연구기관, 정부 및 공공기관, 산업체 등을 말한다.
2. "학제융합JA교원"이란 우리 대학교 교원이 우리 대학교에서 학부·학과(계열) 간 융복합 교육, 연구 및 학생관리를 위해 2개 이상의 학부·학과(계열)에 공동 소속으로 임용되는 교원을 말한다.
3. "대외협력JA교원"이란 우리 대학교 교원이 교육·연구·산학협력 등을 수행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공동 소속으로 임용되는 교원을 말한다.
4. "학연산JA교원"이란 외부기관에 재직하면서 교육·연구·산학협력 등을 위해 우리 대학교에 공동 소속으로 임용되는 비전임교원을 말한다.
5. "원소속학과"란 교원의 임용 당시 소속 학부·학과(계열) 또는 소속 변경이 된 경우에는 변경된 소속의 학부·학과(계열)를 말한다.
6. "참여학과"란 교원이 원소속학과 외 JA교원으로서 소속된 학부·학과(계열)를 말한다.

제 2 장 학제융합JA교원

제 3 조(사유) 학제융합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부·학과(계열) 간 교육 및 연구가 필요한 경우
2. 대학 운영상 입시활동, 취업 및 진로지도 등 학생관리를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 4 조(임용절차) 학제융합JA교원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원소속학과 학부·학과(계열)장 및 참여학과 학부·학과(계열)장을 경유하여 기획조정팀으로 제출하고,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제 5 조(임용기간 및 면직) ① 학제융합JA교원은 매학기 초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용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임용기간 중 임용철회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간서명	이사장	한재수	이 사	김진섭	이 사	

기획조정팀으로 제출한다.

③ 학제융합JA교원의 임용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면할 수 있다.

제6조(직무) 학제융합JA교원은 참여학과에서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할 수 있다.

1. 교육 및 연구
2. 입시활동, 취업 및 진로지도 등 학생관리
3. 기타 위 사항에 부수되는 필요한 업무

제7조(업적평가) ① 업적평가는 학제융합 업무를 포함한 모든 수행업적을 평가한다.

② 학제융합JA교원에 대한 재임용 등 학부·학과(계열) 교수회 평가는 참여학과 교원을 포함하여 학부·학과(계열) 교수회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원소속학과에서 실시한다.

제 3 장 대외협력JA교원

제8조(임용절차) ① 우리 대학교 교원이 외부기관에 JA교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기획조정팀으로 제출하고,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제9조(철회 및 면직) ① 임용기간 중 임용철회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획조정팀으로 제출한다.

② 대외협력JA교원의 임용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면할 수 있다.

제 4 장 학연산JA교원

제10조(자격) 학연산JA교원의 자격요건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결격사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리 대학교 학연산JA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제12조(임용절차) ① 학연산JA교원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부·학과(계열)장은 소속학과 정년계열 전임교원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3호 서식]의 충원요청서를 작성하여 기획조정팀으로 제출하고, 총장은 충원 필요성 및 역할을 검토하여 충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학연산JA교원의 신규임용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제13조(제출서류) ① 학연산JA교원의 신규임용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서(우리 대학교 서식) 1부.
2. 학연산JA교원 임용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3. 학력(졸업 및 수료)증명서 각 1부.
4. 재직(경력)증명서 각 1부.
5. 주민등록 초본, 등본 각 1부.
6. 기본증명서 1부.
7. 기타 임용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제14조(임용기간) ① 학연산JA교원은 매학기 초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간서명	이사장	한래희	이 사	김진섭	이 사	김홍대

② 학연산JA교원의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필요한 경우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5조(임용계약) ① 학연산JA교원의 임용계약은 개별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용계약에는 소속, 임용기간, 임무, 처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임무) ① 학연산JA교원은 우리 대학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학연산JA교원의 강의시간은 주당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시간까지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제17조(재임용) ① 총장은 학연산JA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4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임용기간 만료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희망할 경우, 외부기관 대표자의 동의를 얻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총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해당 교원의 임용기간 중의 업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면직) ① 학연산JA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총장은 임용기간 중이라도 면직할 수 있다.

1. 우리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임용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우리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25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외부기관에서의 직을 상실한 경우 또는 겸직 허가가 취소된 경우

② 학연산JA교원이 재임용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제19조(철회) 학연산JA교원의 임용기간 중 임용 철회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학연산JA교원 또는 소속학과장이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획조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처우) ① 학연산JA교원이 강의·연구·산학협력 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강사료·연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업무상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5 장 보칙

제20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관계법령 및 우리 대학교 제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0000. 00. 00)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0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 영남이공대학교 교원 내부 겸직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학제융합JA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별지 서식 제1호]

학제융합JA교원 임용(철회) 신청서

신청자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신청내용	JA교원 임용( )	임용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참여학과:		
		원소속학과:		
	JA교원 철회( )	철회일자: 20 년 월 일		
		참여학과:		
신청사유	※ JA교원 임용 시 참여학과에서의 역할 상세기술 ※ JA교원 임용 철회 사유 상세기술			

본인은 위와 같이 JA교원 (임용 / 철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확인자: 원소속학과 학부·학과(계열)장 (인)

참여학과 학부·학과(계열)장 (인)

영남이공대학교 총장 귀하

결재	이사장		이 사		이 사	

[별지 서식 제2호]

대외협력JA교원 임용(철회) 신청서

신청자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신청내용	JA교원 임용( )	외부기관명: 참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JA교원 철회( )	외부기관명: 철회일자: 20 년 월 일		
신청사유	※ 외부기관(대학 등) 간 JA교원으로서의 역할 상세 기술 ※ JA교원 철회 시 상세 사유 기술			

본인은 위와 같이 JA교원 (임용 / 철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확인자: 학부·학과(계열)장 (인)

영남이공대학교 총장 귀하

간서명	이사장	강 래 수	이 사	김 진 삼	이 사	

[별지 서식 제3호]

학연산JA교원 충원요청서

요청인원	명
임용예정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충원 필요성 및 요청 사유	
- 구체적으로 작성 - -	
활용 계획(교육)	

전공분야	담당과목명	학 점(주당시수)		비 고
		1학기	2학기	
		( )	( )	
		( )	( )	
		( )	( )	
		( )	( )	
	계	( )	( )	

활용 계획(연구, 산학협력 등)	
활용계획	- 구체적으로 작성 - -

20 년 월 일

_____학부·학과(계열)장

※ 학과(계열) 정년계열 전임교원 3/4 이상 날인함

성명										
날인										

간서명	이사장	한재수	이 사	김진삼	이 사	김춘태

[별지 서식 제4호]

학연산JA교원 임용(철회) 신청서

신청자	외부기관명		직위	
	성명		생년월일	
신청내용	JA교원 임용( )	희망 학부·학과(계열):		
		참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JA교원 철회( )	학부·학과(계열):		
		철회일자: 20 년 월 일		
신청사유	※ 산학융합JA교원 임용시 역할 및 기대효과 상세 기술 ※ JA교원 철회 시 상세 사유 기술			

본인은 위와 같이 JA교원 (임용 / 철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확인자: 희망학과 학부·학과(계열)장 (인)

외부기관 대표 (인)

영남이공대학교 총장 귀하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붙임21] 영남이공대학교 2026.03.01.자 교원 신규임용(안)
(제33호의안 관련)

연번	임용유형	성명	생년월일	학과(계열)	직위	호봉	발령사항	
							내 역	일자
1	신규임용(공채)	김기원		전기자동화과	조교수	비정년	▪ 비정년계열전임교원 조교수에 임함 ▪ 전기자동화과 근무를 명함 ▪ 임용기간 : 2026.03.01~2028.02.29(2년)	2026.03.01
2	신규임용(공채)	이하예진		사회복지서비스과	조교수	비정년	▪ 비정년계열전임교원 조교수에 임함 ▪ 사회복지서비스과 근무를 명함 ▪ 임용기간 : 2026.03.01~2028.02.29(2년)	2026.03.01
3	신규임용(공채)	신희원		사회복지서비스과	조교수	비정년	▪ 비정년계열전임교원 조교수에 임함 ▪ 사회복지서비스과 근무를 명함 ▪ 임용기간 : 2026.03.01~2028.02.29(2년)	2026.03.01
4	신규임용(공채)	이임선		간호학과	조교수	비정년	▪ 비정년계열전임교원 조교수에 임함 ▪ 간호학과 근무를 명함 ▪ 임용기간 : 2026.03.01~2028.02.29(2년)	2026.03.01
5	신규임용(공채)	김은진		간호학과	조교수	비정년	▪ 비정년계열전임교원 조교수에 임함 ▪ 간호학과 근무를 명함 ▪ 임용기간 : 2026.03.01~2028.02.29(2년)	2026.03.01
6	신규임용(공채)	천종애		치위생과	조교수	비정년	▪ 비정년계열전임교원 조교수에 임함 ▪ 치위생과 근무를 명함 ▪ 임용기간 : 2026.03.01~2028.02.29(2년)	2026.03.01
7	신규임용(공채)	김해원		물리치료과	조교수	비정년	▪ 비정년계열전임교원 조교수에 임함 ▪ 물리치료과 근무를 명함 ▪ 임용기간 : 2026.03.01~2028.02.29(2년)	2026.03.01
8	신규임용(공채)	이상협		글로벌외식조리과	조교수	비정년	▪ 비정년계열전임교원 조교수에 임함 ▪ 글로벌외식조리과 근무를 명함 ▪ 임용기간 : 2026.03.01~2028.02.29(2년)	2026.03.01
9	신규임용(공채)	신정희		반려동물스타일리스트과	조교수	비정년	▪ 비정년계열전임교원 조교수에 임함 ▪ 반려동물스타일리스트과 근무를 명함 ▪ 임용기간 : 2026.03.01~2028.02.29(2년)	2026.03.01
10	신규임용(공채)	서연희		사회복지서비스과	조교수	비정년	▪ 비정년계열전임교원 조교수에 임함 ▪ 사회복지서비스과 근무를 명함 ▪ 임용기간 : 2026.03.01~2028.02.29(2년)	2026.03.01
11	신규임용(공채)	이하나		간호학과	조교수	비정년	▪ 비정년계열전임교원 조교수에 임함 ▪ 간호학과 근무를 명함 ▪ 임용기간 : 2026.03.01~2028.02.29(2년)	2026.03.01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붙임22] 영남이공대학교 2026.03.01.자 교원 승진임용(안)
(제34호의안 관련)

연번	임용유형	성명	생년월일	학과(계열)	직위	호봉	발령사항	
							내역	일자
1	승진	최영오		건축학과	부교수	13	▪ 정년계열전임교원 교수에 임함 20호봉을 급함 ▪ 건축학과 근무를 명함	2026.03.01
2	승진	심주희		간호학과	조교수	연봉계약제	▪ 정년계열전임교원 부교수에 임함 ▪ 간호학과 근무를 명함 ▪ 임용기간 : 2026.03.01.~2029.02.28.(3년)	2026.03.01
3	승진	류경진		스마트e-자동차과	조교수	연봉계약제	▪ 정년계열전임교원 부교수에 임함 ▪ 스마트e-자동차과 근무를 명함 ▪ 임용기간 : 2026.03.01.~2029.02.28.(3년)	2026.03.01
4	승진	김윤정		보건의료행정과	조교수	연봉계약제	▪ 정년계열전임교원 부교수에 임함 ▪ 보건의료행정과 근무를 명함 ▪ 임용기간 : 2026.03.01.~2029.02.28.(3년)	2026.03.01

간서명	이사장	한재수	이 사	김진섭	이 사	김윤정

[붙임23] 영남이공대학교 2026.03.01.자 교원 정년보장임용(안)
(제35호의안 관련)

연번	임용유형	성명	생년월일	학과(계열)	직위	발령사항	
						내역	일자
1	정년보장	최영오		건축학과	부교수	▪ 교원인사규정 제35조에 따라 정년보장임용함	2026.03.01

간서명	이사장	한재숙	이 사	김진석	이 사	

[붙임24] 학교법인 영남학원 정관 변경(안)
(제1호의안 관련)

현행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 2025.12.17.	변경(안)	변경사유
제7장 직제 제2절 대학교	제7장 직제 제2절 대학교	
제90조(총장 등) ①~② <생략> ③ 대학교에 교육혁신부총장, 경영전략부총장, 산학연구부총장, 의무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을 둔다. ④ <생략> ⑤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혁신부총장, 경영전략부총장, 산학연구부총장, 의무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순으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 정해진 순서로 총장직무대행자를 임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총장직무대행자를 임명한다.	**제90조(총장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대학교에 교육혁신부총장, 경영전략부총장, 산학연구부총장, **국제교학부총장,** 의무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을 둔다. ④ <현행과 같음> ⑤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혁신부총장, 경영전략부총장, 산학연구부총장, **국제교학부총장,** 의무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순으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 정해진 순서로 총장직무대행자를 임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총장직무대행자를 임명한다.	영남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사항 반영
제92조(하부조직) ① 대학교에 교무처, 학생성공처, 산학연구처, 기획조정처, 입학처, 총무처, 시설관리처, 국제처, 인사관리처, 대외협력처, 법무감사처, 총장실, 인권센터, 사회공헌단을 둔다. ②~⑯ <생략>	**제92조(하부조직)** ① 대학교에 교무처, 학생성공처, 산학연구처, 기획조정처, **정보혁신처,** 입학처, 총무처, 시설관리처, 국제처, 인사관리처, 대외협력처, 법무감사처, 총장실, 인권센터, 사회공헌단을 둔다. ②~⑯ <현행과 같음>	
제3절 전문대학	제3절 전문대학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table>
<tr><th>현행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 2025.12.17.</th><th>변경(안)</th><th>변경사유</th></tr>
<tr><td>제99조(하부조직) ① <생략>
② 각 처장과 본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사무국장은 <u>책임급</u> 직원으로 보한다.
③~⑩ <생략></td><td>제99조(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처장과 본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사무국장은 <u>책임급 이상의</u> 직원으로 보한다.
③~⑩ <현행과 같음></td><td>영남이공대학교 직제규정 및 직원인사규정 개정사항 반영</td></tr>
<tr><td>제102조(사무직원의 정원) 법인, 학교 및 의료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u>별표</u> 1·2·<u>3</u>·4-1과 같다. 단, 의료원 산하 영천병원의 정원은 따로 정하되 별표 4-2와 같다.</td><td>제102조(사무직원의 정원) 법인, 학교 및 의료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u>별표</u> 1·2·<u>3</u>·4-1과 같다. 단, 의료원 산하 영천병원의 정원은 따로 정하되 별표 4-2와 같다.</td><td></td></tr>
<tr><td><u><신설></u></td><td><u>부칙(2026.02.04.)</u>
<u>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u></td><td>부칙 신설</td></tr>
<tr><td>(별표3) 영남이공대학교 일반직원 정원
<table><tr><th>구분</th><th>합계</th><th>행정직</th><th>기술직</th><th>사서직</th><th>운영직</th></tr><tr><td>합계</td><td>41</td><td>39</td><td>0</td><td>0</td><td>2</td></tr><tr><td>책임급</td><td>10</td><td>10</td><td></td><td></td><td>0</td></tr><tr><td>선임급</td><td>15</td><td>14</td><td></td><td></td><td>1</td></tr><tr><td>원급</td><td>16</td><td>15</td><td></td><td></td><td>1</td></tr></table></td><td>(별표3) 영남이공대학교 일반직원 정원
<table><tr><th>구분</th><th>합계</th><th>행정직</th><th>기술직</th><th>사서직</th><th>운영직</th></tr><tr><td>합계</td><td>41</td><td>39</td><td>0</td><td>0</td><td>2</td></tr><tr><td><u>수석급</u>
책임급</td><td>10</td><td>10</td><td></td><td></td><td></td></tr><tr><td>선임급</td><td>15</td><td>14</td><td></td><td></td><td>1</td></tr><tr><td>원급</td><td>16</td><td>15</td><td></td><td></td><td>1</td></tr></table></td><td>영남이공대학교 일반직원 정원 조정</td></tr>
</table>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붙임25] 학교법인 영남학원 교원 임용 시행세칙 개정(안)
(제2호의안 관련)

현행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 2024.08.21.	개정(안)	개정사유
제2조(교원 적용범위 및 구분) ① 이 시행세칙은 정년계열전임교원, 비정년계열전임교원, 강사 및 기타 교원에게 적용한다.	**제2조(교원 적용범위 및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타 교원은 석좌교수, 명예교수, 초빙교원, 객원교원, 겸임교원, 외래교원, 임상교원, 연구교원 등으로 구분한다.	② 기타 교원은 석좌교수, 명예교수, 초빙교원, 객원교원, 겸임교원, 외래교원, 임상교원, 연구교원, **JA교원** 등으로 구분한다.	JA교원 임용근거 마련
<신설>	**부칙(2026.02.0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붙임26] 학교법인 영남학원 교직원보수 규정 개정(안)
(제3호의안 관련)

현행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 2021.10.20.	개정(안)	개정사유
제4조(봉급) 교직원의 봉급월액은 별표1부터 별표4까지의 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봉급)** 교직원의 봉급월액은 별표1부터 별표4까지의 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수석급 신설
<신설>	부칙(2026.02.0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현행>

<별표2>

행정직원 및 기술직원, 사서직원 봉급표

1. 본봉

호봉	책정액	호봉	책정액
1		26	
2		27	
3		28	
4		29	
5		30	
6		31	
7		32	
8		33	
9		34	
10		35	
11		36	
12		37	
13		38	
14		39	
15		40	
16		41	
17		42	
18		43	
19		44	
20		45	
21		46	
22		47	
23		48	
24		49	
25		50	

2-1. 영남대학교 직급수당

직급	책정액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2-2. 영남이공대학교 직급수당

직급		책정액
책임급	1호	
	2호	
	3호	
선임급	1호	
	2호	
	3호	
원급	1호	
	2호	
	3호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개정안>

<별표2>

행정직원 및 기술직원, 사서직원 봉급표

1. 본봉

호봉	책정액	호봉	책정액
1		26	
2		27	
3		28	
4		29	
5		30	
6		31	
7		32	
8		33	
9		34	
10		35	
11		36	
12		37	
13		38	
14		39	
15		40	
16		41	
17		42	
18		43	
19		44	
20		45	
21		46	
22		47	
23		48	
24		49	
25		50	

2-1. 영남대학교 직급수당

직급	책정액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2-2. 영남이공대학교 직급수당

직급		책정액
수석급		
책임급	1호	
	2호	
	3호	
선임급	1호	
	2호	
	3호	
원급	1호	
	2호	
	3호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